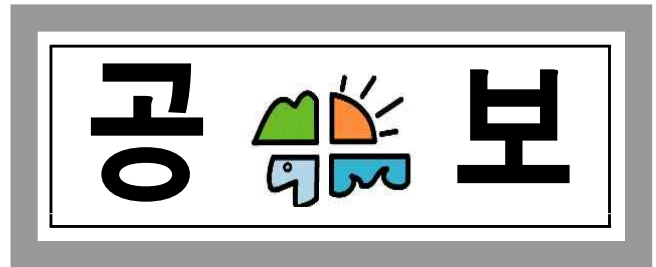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96호 2016년 6월 24일(금)

조 례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공 고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0
- 공인공고 12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3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87 호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속초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속초시”를 각각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속초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중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속초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을 “지원”으로, “최종 이차보전금”을 “이차보전금”으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에 제목 “(자금의 상환등)”을 “(자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사업”을 “해당사업”으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변경하였을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한다.

별표에 지원대상기업란에 “제4호에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를 신설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제3조 관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기업	- 우선 지원대상(제조업중) 가. 수출상품 생산업체 나.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 특별 지원대상 가. 설악산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 기타 지원대상 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용 도	시설 및 운전자금
용 자 한 도	-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 3억원 이내 가.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 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 - 특별 지원대상 : 5억원 이내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가. 기존 은행융자액 범위 안(금융기관 부채현황서 등 참조) 나. 신규 은행융자액 범위 안(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 - 기타 지원대상(비제조업) : 7천만원 이내 가.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 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지 원 조 건	- 금리 :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 이내를 이차보전 - 이차보전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단,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 기간연장 : 1년만 연장가능 (단, 특별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신청서

1. 상호명 : 【☎(사무실) : 】
2. 소재지 : (휴대폰 :)
3. 대표자 :
4. 사업자등록번호 :
5. 법인등록번호(법인일 경우 기재) :
6. 업체현황

업 태		업 종	
취급품 (생산품)	주요품목 : 매 출 액 :	종사자	생산직 : 명(남 여) 사무직 : 명(남 여) 계 : 명(남 여)
자 본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계 :	수 출	년 : 천\$ 년 : 천\$

7. 융자 신청액 : 금 원(₩)
8. 융자희망은행 :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위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용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제출)
- ③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서(증명서) 1부.
- ④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01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1. 상호명 : 【☎(사무실) : 】
2. 소재지 : (휴대폰 :)
3. 대표자 :
4. 사업자등록번호 :
5. 법인등록번호(법인일 경우 기재) :
6. 대출 내역
- : 201 년 월 일, 은행, 대출액 : 원
7. 융자금 사용내역

자금사용내역	수 량	금 액	비 고

8. 연장신청 사유 :
9. 연장 신청 금액 :
10.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 상환방법 :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위와 같이 연장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01 . . .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규 수혜업체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88 호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3호 중 “옹호 내지 증진하기”를 “증진하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규정한”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소비자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보호를”을 “소비자 권익증진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비자단체”를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범
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의 규정에”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
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2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비자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소비자보호”를 각각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제5호 중 “부의 하
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를 “물가안정관련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특
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희망일자리추진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제34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목적 및 취지를
반영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속 초 시 장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 2016. 6. 24. ~ 7. 15. (21일간)
 라.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계	2필지			1,383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산98-7	임	9,917	1,357	김경숙 고옥현 김미용 박미정	속초시 도문동 산98-7, 산98번지 단독주택 19가구 2016-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제65호 (2016. 6. 13.)	*건축주 김경숙 고옥현 김미용 박미정
	산98	임	9,146	26	김동혁		

- 마.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바. 관계도서 :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사. 문의사항 :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033-639-2256)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 치 도

☐ ☐ NONE



도로 지정 현황도

☐ ☐ NONE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속 초 시 장

1. 공인 신조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2.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최초사용/폐기 년월일	인증기계기번호
신조	속초시장인 (노학동인증기전용2호)		훈민정음체 가로(3.0cm)× 세로(3.0cm)	2016.06.24	GT5000-1443
신조	노학동장인 (노학동인증기전용4호)		훈민정음체 가로(2.4cm)× 세로(2.4cm)	2016.06.24	GT5000-1443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31-34번지
3. 공고기간 : 2016. 6. 24.~ 2016. 7. 8.(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허가(신고)번호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청학동	631-34 번지	전	74	17	유화정	2016-건축허가-68호 (2016. 6. 22.)	건축주 : 이지숙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